

사업장에서 산업보건관리를 해나가는 자료의 하나로서, 직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은 우선 점검일람표라 할 수 있다. 손쉽게 이용하여 직장내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검표는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. 여기에서는 각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, 작업관리자들이 작업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연속 소개한다.

작업별 체크리스트 5

【작업방법을 중심으로 한 점검】

산

업현장에는 실제로 수많은 종류의 작업이 있다. 작업의 종류가 다르면 사용하는 기계도 달라지고, 작업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. 따라서 수많은 체크리스트 중에서도 실제로,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작업별 체크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런데 재해가 발생하는 2가지 요인에는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이 있다. 바꾸어 말하면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.

이중에서 기계설비 자체의 점검에 있어서는 '정기적 자가점검지침' 등 전용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래서 본 작업별 체크리스트는 필요한 기기나 안전장치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인적 요인, 불안전 행동의 일소를 목적으로 해서 '작업방법'을 최고 중점사항으로 두고 체크포인트를 배열하였다.

분류하여 다른 작업도 전 업종에 공통되는 것 이외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의 주요한 작업을 선별하였다.





연작업 체크리스트

구분		점검사항	양부	개선사항
환경 관리	설비·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국소배기장치나 배기통의 후드, 국소배기장치의 덕트, 제진장치가 법에 적합한가 ●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의 팬은 규정대로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●국소배기장치나 배기통의 성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●전체환기장치의 성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●휴게실, 작업복의 보관설비, 샤워설비, 수세용용액, 오염제거설비 등의 설치상태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●흡연, 음식 금지표시를 해 놓았는가 		
	환경측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1년마다 1회, 정기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●측정기관은 3년간 보존되어 있는가 ●기준에 맞는 측정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●필요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있는가 		
	자주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1년이내마다 1회, 정기적으로 국소배기장치, 제진장치의 정기자주검사를 실시하고, 3년간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●최초 사용시 및 분해·개조·수리시에 점검을 하고 있는가 ●점검시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수하고 있는가 		
작업 관리	자격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연작업주임자는 선임되어 있는가 ●연작업주임자는 소정의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●작업자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		
	작업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작업표준에 의거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가 ●호퍼에 투입작업중일 때는 호퍼 아래쪽에서의 작업을 금지하고 있는가 ●연함유 도료 벗겨내기 작업에서는 습식으로 하고, 떨어진 연함유 도료는 신속하게 제거하고 있는가 ●소성로에서 연합물을 꺼내는 작업을 할 때는 호퍼·용기를 출구에 근접시키고, 꺼낼 때는 긴 자루 등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●연장치내 작업에서는, 법정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●분말인 연 등을 실내에 저장할 때는 안전한 용기에 담고, 떨어졌을 때는 소정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있는가 ●빈 용기 등은 분진발산 방지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실내작업장, 휴게실, 식당의 바닥 등은 매일 1회 이상 진공청소기나 물걸레 등으로 청소하고 있는가 ●작업에 따라서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나 보호복 등의 보건보호구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가 		
	직장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작업개시점검, 정기점검, 수시점검은 하고 있는가 ●직장순시자가 정해져 있는가 ●순시기록이 보존되어 있는가 ●지난번의 순시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은 처리되어 있는가 		
건강관리	건강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채용시, 배치전환시 건강진단은 실시하고 있는가 ●6개월이내마다 1회, 정기건강진단은 실시하고 있는가 ●건강결과는 5년간 보존되고 있는가 ●병상이 있는 경우, 의사에게 수진받도록 하고 있는가 ●연중독에 걸린 사람을 취업금지하고 있는가 		



고압실내작업 체크리스트

구분		점검사항	양부	개선사항
환경관리	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작업실, 기관실, 송기관, 공기청정장치, 배기관, 압력계, 자동경보장치, 감시창, 피난용구 등의 설치상태는 법에 따라 적합한가 ● 기관실, 작업실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였는가 		
	점검기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설비의 점검은 법령의 사항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가, 또 수리나 그 기록의 보존 등은 실시하고 있는가 ● 송기설비의 사용개시 때, 분해·개조·수리시,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설비의 재사용시에 점검하고 있는가 		
작업관리	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고압실내작업주임자 면허를 가진 자로서 작업실마다 작업주임자를 선임하고 있는가 ● 고압실내작업주임자는 소정의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● 작업자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		
	작업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작업표준에 의거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가 ● 기관실에서 가압을 하는 경우, 0.8kg/cm² 이하의 속도에서 하고 있는가 ● 고압하에서 작업시간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● 작업실·기관실의 탄산가스 분압이 0.005kg/cm²를 넘지 않도록 환기 등을 하고 있는가 ● 작업실에서의 유독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환기나 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● 기관실에서의 감압을 하는 경우, 소정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● 기관실에서의 감압을 하는 경우, 소정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 감압상황의 기록 등이 실시되고 있는가 ● 연락원을 상시 배치하고 있는가 ●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있는가 ● 배기침하가 있는 경우,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있는가 ● 발파를 한 경우, 작업실내의 공기가 발파전의 상태로 회복된 후에 작업자를 입실시키고 있는가 ● 화상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● 깔날 아래쪽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● 재압실(再壓室)을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실시하고 있는가 		
	직장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작업개시점검, 정기점검, 수시점검은 실시하고 있는가 ● 직장순시자는 정해져 있는가 ● 순시 기록은 보존되어 있는가 ● 지난번의 순시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은 처리되어 있는가 		
건강관리	건강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채용시, 배치전환시 건강진단은 실시하고 있는가 ● 6개월이내마다 1회,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가 ● 건강진단은 법정항목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가 ● 진진결과는 5년간 보존되고 있는가 ● 노동관서에 건강진단결과를 보고하고 있는가 ● 소정의 질병에 걸려있는 작업자는,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, 고기압업무에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가 		